

[붙임1]

【한국교원대학교 공고 제2019-159호】

2019년도 제1회 한국교원대학교 국가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2일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근무예정지	임용예정시기
공업서기보	2명	한국교원대학교 (정주시 흥덕구 태성탑연로 250)	2019. 11월~12월 (예정)

2 담당예정 업무

- 전기·통신설비 부문 설계 및 공사감독, 시설행정 업무
- 승강기 유지 관리
-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 전기실, 통신실 관리 업무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32조(임용권자) 제3항
- 「공무원임용령」 제53조(임용권의 위임), 제93조(결원의 적기 보충),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등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응시연령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따른 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에 따라 9급은 18세 이상인 자
 - ※ (9급) 2001.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2항에 따라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직무관련 자격증 중 하나 이상 갖춘자

직렬	직류	대상자격증	
공업	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2년)

- ※ 1. 기능사의 경우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 분야(전기안전관리)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2. 자격요건(자격증 소지여부)은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하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서류전형에만 적용)

- 응시 자격요건의 자격증 소지 후 관련 직무 분야 근무경력
 - ※ 1. ‘근무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사업체 제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
 - 2. 경력 확인을 위한 경력증명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사본제출 가능
- 기타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산업)기사
 - ※ 1.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되며,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3. 공업9급(전기)의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근무는 우대조건에서 제외

다. 가산점(서류전형에만 적용)

- 국가판관위원회 주관·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4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 시 만점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만점과 개별적으로 가점 부여

등급	1급	2급	3급	4급
가 점	5점	4점	3점	2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성적만 인정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이내일 경우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위원 :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 외부위원 위촉
 - ※ 우리 대학 근무자 또는 근무경력자가 응시한 경우 전원 외부위원 위촉
-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우대요건 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방법 : 담당예정 업무 중심의 자기소개 및 심층면접 등
- 면접시험 기준
 -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평정요소	세부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공익에 봉사하고 헌신 / 윤리·준법정식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전문성 ▶ 전문분야의 정보분석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논리적 의사소통과 조정·조율능력 ▶ 협상과 조정·조율능력
4. 예의·품성 및 성실성	▶ 건전·성숙한 시민정신 / 목표관리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창의적 기함문제해결 / 비전(목표) 제시 / 리더십

- 면접시험 위원 : 2명 이상으로 하되, 외부 위원을 1/2 이상 위촉

※ 우리 대학 근무자 또는 근무경력자가 응시한 경우 전원 외부위원 위촉

6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에 따라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임용이 되지 않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시험 일정(예정)

구분	기간	장소
시험계획 공고	'19.10.2.(수) ~ 10.14.(월)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교육부 채용공고 홈페이지 ·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19.10.7.(월) ~ 10.14.(월) 18:00까지	· 한국교원대학교 총무과 (방문 및 우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9.10.21.(월)	·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면접 시험	'19.10.29.(화) <예정>	· 우리대학교 지정 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	'19.11.6.(수) <예정>	·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임용(예정)	'19. 11~12월 중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서식>의 응시원서 등 사용
- 접수기간 : 2019. 10. 7.(월) ~ 10. 14.(월) 18:00까지
- 접 수 처 : 우)2817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대학본부 2층 총무과(인사팀) ☎ 043-230-3077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 시간 09:00~18:00(12:00~13:00 제외) 중 접수가능(휴일 제외)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
 -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기재

9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서식1>
- 이력서 1부<서식2>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및 자격사항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서식3>
- 직무수행계획서 1부<서식4>
- 지원(필수)자격증 사본 1부
 - 면접시험 당일 자격증 원본 필히 지참
-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경력(재직)증명서
 - 객관적 증거가 가능한 서류만 가능하며,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된 증명서 제출
- 우대요건 해당자 관련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각 1부<서식5>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0 유의 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함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IX. 기타 참고사항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서식6] 채용서류 반환신청서 작성 제출시 반환 가능
- 채용 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는 본 시험 계획에 따른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음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교원대학교 총무과로 문의 바람(☎043-230-3077).

붙임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한국교원대학교	시설관리과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설비 부문 설계 및 공사감독 ○ 전기·통신설비 관련 시설행정 업무 ○ 송강기 유지 관리 ○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 전기실, 통신실 관리업무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 통 역 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전문기적 능력(전기통신 관련 설계 및 관리능력, 연구실 안전 환경관리), 행정업무 능력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실, 통신실 운영 전반에 관한 지식 ○ 시설(전기, 통신)물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지식 ○ 전기실 관리, 수배전반 관리등과 관련된 지식 ○ 설계도서 작성을 위해 관련된 지식 ○ 전기 및 통신 관련 유지보수 관련 지식

관련분야 : 전기(안전관리)분야	
응시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술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기 능 장: 전기 ○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분야) ○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분야) ○ 기 능 사: 전기(2년) ※ 기능사의 경우 자격증 소지 후 괄호 안의 전기(안전관리)분야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함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 자격요건의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 경력 (경력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근무는 우대조건에서 제외 ○ 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응시원서 작성요령

<서식1>

응시원서

본인은 2019년도 한국교원대학교 국가공무원(공업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각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_____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공업서기보)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응시원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작성합니다.

